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벌금·징역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와 벌금 및 징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의 위반사항”에 있어 조치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계서류의 작성에 대해 법조항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참고 1〉 (일쪽)

산업재해조사표

관리(산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공사현장, 기사명) ()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생산품	
사업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원·도급 <input type="checkbox"/> 1차수급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안전관리 담당자		공사장류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장소	작성시간
인격피해	사망 ()명, 부상 ()명	발생장소	<input type="checkbox"/> 대상(설비:)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물적피해	원인 조항별지정	개인보호장비	<input type="checkbox"/> 대상(장비:)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직업활동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복수()명	기인물(재해확인물차출물)	
발생원인 직위/직무 공중 및 내용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			
재발 방지 계획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동일재해로 재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별도 서식에 추가 기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년 월 일	통용업무종류	년 월
고용 형태	<input type="checkbox"/> 상용 <input type="checkbox"/> 임시 <input type="checkbox"/> 임용 <input type="checkbox"/> 시간제	발생 시점	<input type="checkbox"/> 정규직업 <input type="checkbox"/> 식사후직 <input type="checkbox"/> 작업전	<input type="checkbox"/> 출퇴근	
근무 형태	<input type="checkbox"/> 가속 <input type="checkbox"/> 자정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근로 시간	<input type="checkbox"/> 휴일근무 <input type="checkbox"/> 시간외근무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업	()	장래종류 ()	장래부위 ()	기해물	
재해당시 수행 작업과정, 내용					
관계자 확인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210mm × 297mm(선용종이60g/㎡(생활용품))

〈참고 2〉

중재해발생보고서

발 시: 년 월 일
발 신:
수 신: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	-----	-----	------	----
- 재해자 인력사항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종	입사일	동종경력	재해정도
						사망: ()명
-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입시	장소	발생원인	기인물

- ◎ 사고결과
- ◎ 재해자에 대한 조치
- ◎ 유가족과의 협의사항
- ◎ 경찰서 조사 받은 내역
 - 조사 받은이
 - 담당 경찰관명

1. 보고의무 위반(법 제10조 제1항)

사업주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즉,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발생개요 및 피해사항,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조치기준

미 보고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토록 시정조치하고 불이행시에는 범죄인지를 보고 후 수사를 착수하되,

(2)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을 제외함) 미게시 또는 미비치

나. 조치기준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단, 제2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발생시 즉시 부과 및 시정토록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1)항은 300만원(과태료), (2)항은 100만원(과태료) 부과

라. 관계서류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영, 규칙, 기준)

4. 근로자대표가 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 제2항)

근로자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 또는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제20조 제1항, 제29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 제36조 제1항, 제41조에 규정된 사항
-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가. 위반사항

- (1)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 (2)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3) 법 제20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제5호 제외)
- (4) 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5) 법 제36조 제1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6)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 (7) 법 제42조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나. 조치기준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1) · (2)항은 300만원(과태료), (3) · (4)항과 (6) · (7)항은 200만원(과태료), (5)항은 100만원(과태료) 부과

5. 안전 · 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 · 보건표식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가. 위반사항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1개소당)

나. 조치기준

부착장소, 부착내용, 크기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다. 부과금액 : 10만원(과태료) 부과

라. 관계서류 : 산업안전보건표지 설치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중복선임 포함(법 제13조 제1항)

사업주는 다음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가. 위반사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로 미선임기간이 2월 이상인 경우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로 미선임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

나. 조치기준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의 (1)항은 300만원(과태료) (2)항은 200만원(과태료) 부과

라. 관계서류 : 관리책임자선임등 보고서(참고 4) 

(자료제공 :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 동부출장소 조영수 소장)

〈참고 4〉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					
① 사업장명	②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계명	남명	여명
③ 소재지	(전화 :)		④ 근로자수		
구분	내역	⑤ 성명 (기관명)	⑥ 직위	⑦ 선임일자	⑧ 직위 및 직책
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⑩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⑪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					
⑫ 산업보건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자격서면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경우에 한함.)
2. 제직증명서

32321-00111호 210mmX297mm
99. 4. 1 개정판 (신분용지 54g/m² (제용부동) © 대한산업안전협회